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2. 19(금) 10:00

제2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칭)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칭)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5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2. 8.
- 라. 회부일자 : 2021. 2. 8.

2. 제안이유

2021. 4월 준공예정인 독산1동(롯데알미늄 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내 보육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운영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1) 위탁업무
 -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 ▶ 보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
(교육·영양·건강·안전·부모에 대한 서비스·지역사회와의 교류)
 - ▶ 운영시스템(CCTV등), 어린이집 관련서류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행
- 2)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에 의한 신규위탁
- 3) 위탁기간 : 2021. 7. 1. ~ 2026. 6. 30.(5년)

4. 참고사항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7조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독산 1동 롯데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내 신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위탁 사무 주요 내용

1)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현황		위탁체 현황		원장	보육정원	비고
		연면적 (㎡)	층수	위탁체명	위탁기간			
(가칭) 구립독산 롯데캐슬 어린이집	독산동 1005번지 롯데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내 (독산1동)	382	지상1층	-	2021.7.1. ~2026.6.30.	-	69 (예정)	신규위탁 (21.7.1 개원예정)

2)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에 의한 신규위탁

3) 위탁기간 : 2021. 7. 1. ~ 2026. 6. 30.(5년)

○ 검토 의견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보육사업을 제고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 7. 18.>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 7. 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개정 2016. 7. 18.> [전문개정 2020. 7. 17.]

③ 삭제 <2020. 7. 17.>

④ 삭제 <2016. 7. 18.> [제목개정 2016. 7. 18.]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본조신설 2020. 7. 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12.30.>

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개정 2011.3.18.,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3.18, 2014.12.30.>

제14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④ 재수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항 전부개정 2011.3.18]

제1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